

	<h2 style="margin: 0;">사회봉사활동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1-39
			제정일자	2013.07.17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교직원

**제2조(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
2.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사회문화단체, 체육단체, 장학단체, 사회 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
3.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
4. 공공기관 의뢰, 교육, 강연, 평가, 출제, 심의위원 활동
5. 국내·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
6.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특별강연
7.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8. 학생 봉사 활동 지도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제3조(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본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4조(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관리한다.

**제5조(교직원 봉사상)**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장 학 생

**제6조(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등)

2. 공공기관 봉사활동(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3. 사회공익 봉사활동(환경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시민 공익단체 등)
4.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5. 지역사회 봉사활동(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6. 가정복지 봉사활동(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7. 공인 기관(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제7조(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주관부서)** ①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업무는 학생부처장이 주관하며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한다. <개정 2017.09.01>

②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심의는 학생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7.09.01>

**제8조(업무정책수립)** 업무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 정책을 수립한다. <신설 2017.09.01>

**제9조(사회봉사활동 지원 시행)** ①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발 방법, 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②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7.09.01>

③ 학생이 개인 또는 팀별로 국내의 공인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9.01>

④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또는 봉사 기관 발급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본 대학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제10조(효과성평가)** 당해 학년도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업무가 종료되면 학생위원회에서 연간 지원업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신설 2017.09.01>

**제11조(환류)** 업무주관부서는 학생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09.01>

**제12조 (학생 사회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09.01>

**제13조(손해배상)** 교직원 또는 학생이 사회봉사 활동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부상 등을 입거나 타인 및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신체(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7.09.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